

의안번호	2201641
의 퇴 인	최은석의원
회 답 일	2024. 9. 27.
추 계 번 호	24D169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유족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특수임무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 600만원, 2030년 6억 3,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1억 600만원(연평균 6억 2,1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생계지원금 (안 제75조의2)	578	582	587	592	598	2,937	587
장제보조비 (안 제75조의3 신설)	28	31	34	37	40	169	34
합계	606	613	620	629	638	3,106	6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5조의2(생계지원금)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유족에게 연령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75조의4 신설(장제보조비 지원 등)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81조제2항 신설(위임 및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5조의2(생계지원금)	○	
2	안 제75조의4 신설(장제 보조비 지원 등)	○	
3	안 제81조제2항 신설(위임 및 위탁)	×	미대상: 특수임무유공자의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는 현행법 ¹⁾ 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의 위탁 가능기관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1) 이 법 제36조의2(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시행령 제38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특수임무유공자 생계지원금 연령제한 삭제(안 제75조의2)

- 개정안에 따라 현재 80세 이상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계지원금을 연령제한 없이 지급하는 경우 대상자의 확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생계지원금 사업 현황) 국가보훈부의 ‘생활조정수당’사업의 내역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는 ‘생계지원금’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19억 5,800만원(9,965명 대상)의 예산 편성
 -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의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표 2] 참조)을 곱하여 향후 대상자를 산출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중 80세 미만 비중 94.0%, 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유족 중 80세 미만 비중 71.7%, 특수임무유공자 중 저소득층 비율(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3.8% 적용하여 생계지원금 대상자를 추정
 - 80세 미만 비중은 국가보훈부에서 월별로 발표하는 보훈대상자 연령별현황(2024년 8월말 기준) 자료 중 특수임무유공자의 연령 자료 참조
 - 특수임무유공자 저소득층 비율(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3.8%는 국가보훈부에서 3년마다 수행하는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366쪽 참조

[표 2]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유족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특수임무유공자	2,950	2,938	2,925	2,879	2,852	-0.8%
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유족	836	873	942	987	1,037	5.5%
합 계	3,786	3,811	3,867	3,866	3,889	0.7%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표 3] 생계지원금 대상자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특수임무유공자(A)	2,781	2,757	2,734	2,711	2,688
특수임무유공자 선순위유족(B)	1,219	1,286	1,358	1,433	1,512
80세미 만비중	특수임무유공자(C)	94.0%	94.0%	94.0%	94.0%
	특수임무유공자 선순위유족(D)	71.7%	71.7%	71.7%	71.7%
80세미 만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E=A×C)	2,614	2,592	2,570	2,549
	특수임무유공자 선순위유족 (F=B×D)	874	923	974	1,027
기준중위소득 50% 이하(G)	13.80%	13.80%	13.80%	13.80%	13.80%
생활수준고려한 80세 미만 대상자 ((E+F)×G)	481	485	489	494	49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생계지원금은 월 10만원으로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10만원으로 가정
- (추가재정소요) 위에서 산출된 대상자 수에 생계지원금 및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결과는 향후 5년간 29억 3,700만원으로 추정

[표 4] 생계지원금 지원 시 연령제한 삭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80세 미만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선순위유족(A, 명)	481	485	489	494	498	
생계지원금(B, 만원)	10	10	10	10	10	
소요비용(A×B×12, 백만원)	578	582	587	592	598	2,937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장제보조비 지원(안 제75조의4 신설)

-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현황)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사업의 내내역 사업인 ‘장제보조비’ 사업에서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지 아니한 경우²⁾,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4억 4,200만원(2,210명×20만원)임
 -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중 사망자 수는 아래와 같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인 9.2%를 추계기간 동안 적용

[표 5] 특수임무유공자 사망인원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특수임무유공자 사망인원	76	87	90	113	108	9.2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 (지원단가) 장제보조비 지급단가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사업 상의 단가인 20만원을 적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
- (추가재정소요) 대상자 수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결과 향후 5년간 1억 1,800만원으로 추정

[표 6]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장제보조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사망자(명, A)	141	154	168	183	200	
장제보조비 단가(만원, B)	20	20	20	20	20	
소요비용(백만원, A×B)	28	31	34	37	40	1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국가가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하거나 안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등의 생계지원금 지원 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장제비 지원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31억 600만원(연평균 6억 2,1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생계지원금 연령제한 삭제(A)	578	582	587	592	598	2,937	587
장제보조비(B)	28	31	34	37	40	169	34
합계(A+B)	606	613	620	629	638	3,106	6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